
1 ()

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2

()
11 [1]
12 [2]
13 []
14 []
15 []

3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4

23 []
24 []
25 []

5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6

- 35 []
- 36 []
- 37 []
- 38 [가]
- 39 []
- 40 []
- 41 []

1 ()

1

1 【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 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 】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 과 적립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3 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 (이하 장애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급여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2. 적립계약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적립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적립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3 【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 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

20 () 1

가 1 5

가

가

7 【 】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며, 보험료 납입중인 때에는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단체에서 부담한 보험료 부분까지도 납입하여야 합니다.

8 【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20조(해약환급금) 제 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9 【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은 보험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 4조(계약의 무효)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연령을 적용합니다.

② 제 1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 】

가

1

가

가

2 ()

11 【 1 】

(, 1 가 1 가 1 가)
 . 가 1 1 .(1)
 가 1)
 가

2 가

1. 24 (가)

2. 23 (가)

가

가

가

12 【 2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약정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3 【 】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33조(약관대출) 제 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로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 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0조(해약환급금)제 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4 【 】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승낙거절시 보험료 반환, 책임개시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11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

16 【 】

- 가 (1 가)
1. :
 2. 가 : 1

17 【 】

16 () 2
가
(') 27
() 2 ()
)
가
16 () 2
180
180

16 ()
2

() 가
2) ()
()

18 【 가 】

가

1. 가
, 가 ()
2

2. 가
가 , 가

3. 가
1 가

1. 1 1

2. 1 2

3. 1 3

19 【 ,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 16

(별표1)

① 만기보험금 (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지 급 액	책임준비금 지급

② 사망보험금 (약관 제16조 제2호)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지 급 액	사망급여금(200만원)과 책임준비금을 합하여 지급

() 1.

『 『

2.

(2) _____

(,

)

* ()
1993-3 , 1995. 1.1.)

1.	V01 - V09
2.	V10 - V19
3.	V20 - V29
4.	V30 - V39
5.	V40 - V49
6.	V50 - V59
7.	V60 - V69
8.	V70 - V79
9.	V80 - V89
()	
10.	V90 - V94
11.	V95 - V97
12.	V98 - V99
13.	W00 - W19

14.				W20 - W49
15.				W50 - W64
16.				W65 - W74
17.				W75 - W84
18.	,			W85 - W99
19.	,			X00 - X09
20.	가			X10 - X19
21.				X20 - X29
22.				X30 - X39
23.				X40 - X49
24.				X58 - X59
25.	가			X85 - Y09
26.				Y10 - Y34
27.				Y35 - Y36
28.		,		Y40 - Y59
29.				Y60 - Y69
30.				Y70 - Y82
31.				Y83 - Y84
32.		2	1	1

-.

(L23.3)

-.

,가

A00 ~ R99

가

가

-.

-.

-.

-.

-.

(Y35.5)

3	1. 2. 3. 3 2 4. 5. 3 2 6. 5 가 7. 4 가 가 가 8. 10 가 9. 10. (4 5 6) 4 5 6 가
4	1. 2. 3. 4. . 5. ' 3 1 6. 3 1 7. 가 5cm 8. 가 가 가 9. 가 가 1 가 3 가

4	10. 5 가
	11. 가 가 3 가
	12. 10 가
	13. 5 가
	14.
	15. ()
	16.
5	1.
	2. 3 2
	3. 3 2
	4. 가 가
	5. 가 가 가 1 가 가 2 가
	6. 가 가 가
	7. 3 가 가 가
	8. 가 가 가 1 가 가 3 가
	9. 5 가
	10. 가 가 2 가 4 가
	11.

5	12.
	13. 가
	14. ()
	15.
	16.
6	1.
	2. 3 1
	3. 3 1
	4. 가 3cm 5cm
	5. 가 가
	6. 가 가 2 가
	7. 가 가 2 가
	8. 가 가 1 가 2 가
	9. 가 4 가
	10. 가 3 가
	11.
	12.
	13. 가
	14.

()

1. 가.

가 가 가
(A.M.A) 가 4
A.M.A

2.

가)가 (

- (1)
- (2)
- (3)
- (4)
- (5)

3.

2 , (2) (5) (1)
, (1)

4.

1) (1) (5) 1 , (2)
(1)

2)) , (가
가

5.

0.02

가

6.

0.06

가

7.

가.

1) 표) , (오, 흥) (L, D, R), 3 (A, C), (M, B), 가

2) 가

3) 가

() 가

8.

가.

가

2

가

9.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헨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뼈가 결손 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장식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sum \frac{\text{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text{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times \text{비례치})$ 이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 14.

가

가.

35°
(側灣)

20°

10° 15°
(側灣)
50%

(側灣)

1/4 가
가 AMA

1/2 가
가 AMA

3/4 가
가 AMA

15. 가
가. 가 가 가 가 () ,
)
1) 가 가 1/2 ()
)
2) 가 가 (1/2)

- ()
 ()
 1/2 가
16. 가
 가. 가
 가 (가)
- 가
 1) 가 ()
) 1/2 ()
) 1/2
- 2) 가 ()
)
- ()
 ()
 1/2 가

17.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 이상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

(별표 4)

(제30조 제2항 관련)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제16조제2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만기보험금 (제16조제1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20조1항)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복리로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

1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2

- ()
- 11 []

3

-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4

- 19 []
- 20 []
- 21 []

5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6

- 31 【 】
- 32 【 】
- 33 【 】
- 34 【 가 】
- 35 【 】
- 36 【 】
- 37 【 】

2 ()

1

1 【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 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 】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 과 적립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3 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이하 장애분류표라 합니다)

1 가

2. 가

1 . ()

3 【 】

15 .
1
,
가 1

4 【 】

가 ()

가

가 1

(2 가
10
3)

2

5 【 가 】

1.

, 가

2. 15 ,

6 【 】

1.

2.

3. ()

4.

가 1 1

가
16 () 1

가 1 3

가
가

7 【 】

가

1

1

가

8 【 】

16 ()

1

가

9 【 】

4 () 2

1

6

6

1

가

10 【 】

가

1

가

가

2

(

)

가 1
2. 가 가

3. 가 가

1. 1 1

2. 1 2

3. 1 3

15 【 , 】

12 (가 ,) 2 가
가
가

16 【 】

1 『 ×90%』, 3 『 ×70%』, 2 『 ×9
5%』, 3 『 ,

1 (1 1 , 4 1

, 7 1 , 10 1) 가 3 ,
1 2%

17 【 】 가

18 【 】
가 2

4

19 【 】 (“)
3 ()

20 【 】 가 19 ()

가

- 가
1. 가
 2. 가 1 가
 3. 가 1) 2 (가
 4. 가 () 가
- 가 1) 가 가
- , , ,

1

“

”

1

, 가

19 ()

가 1

7 가
가 , 1

4 “
” .
,) 1 20 (,

,) 1 20 (,

1 가
가 ,

가 가 .

27 【 ()
() 2 12 (

1 ,

(1) _____

(12 1)

(12 2)

	1 가
	(10%)

() 1.

2.

(2) _____
1 () (2)

(3) _____
1 () (3)

(4) _____
(25 2)
1 () “(4)
”

1 【 】

가
· ()
,
) · ()
) · ()
· ()
) · ()

2 () 가
·

2 【 】 가 ()
1)
·

3 【 】

4 【 】

1. ()
- 2.
- 3.

7 【 】

(1) _____

가	$\begin{matrix} \text{ㄱ} \\ \text{ㄴ} \end{matrix}$
	$\begin{matrix} \text{ㄱ} \\ \text{ㄴ} \\ \text{ㄷ} \end{matrix}$ (10 , 15 , 20)

- () 1. 10
10
2. 10
 , 15 , 20
 10 , 15 , 20
- 3.
4. , 3 , 6
 $\begin{matrix} \text{ㄱ} \\ \text{ㄴ} \end{matrix}$, 3
 , 6
- 5.



1

- 1 []
- 2 []
- 3 []
- 4 []
- 5 []
- 6 []

2

- ()
- 7 []
- 8 []
- 9 []

3

- ()
- 10 []
- 11 []
- 12 []
- 13 []
- 14 []

4

- 15 []
- 16 []

5

- 17 []

9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

10 【 】

() (“ ”) (2)
가
가 (“)
1.
2. 1 가

11 【 】

10 1 가
, 27 ()
2
가
10 1 2
180

2

() 가
()

12 【 가 】

- 가
- 1. 가 가 () 2 가
- 2. 가 가
- 3. 가 가

- 1. 1 1
- 2. 1 2 3

13 【 , 】

3
10
1
7

14 () 1

1. 가 : 1 50%, 1
1%
2. :
+ 1%

5

17 【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_____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시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별표2) _____

(2) “ 1 () ”

(별표3)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애등급분류해설)

1. 장애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애의 정의

장애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애의 평가시 하나의 장애가 두 개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참조,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애는 제외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口, ㅂ, ㅍ),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써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7.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1

- 1 []
- 2 []
- 3 []
- 4 []
- 5 []

2

- ()
- 6 []
- 7 []
- 8 []

3

- ()
- 9 []
- 10 []
- 11 []
- 12 []

4

- 13 []
- 14 []

5

- 15 []

9 【 】
) (" ") (2
 2 6 3 (" ") 가
 (" ")
 (1 " ")

10 【 】
 9 ()
 180
 180
 2
 () 가
 2 ()
 9 ()
 가
 가
 3 가
 2 가
 , 가
 가
 3 가
 가

4 가 가

1. 4 .

가
2. 1

가

가 70% .

11 【 가 】

가

1. 가 가
, 가

2. 가 가
, 가

3. 가 가
1 가

1. 1 1

2. 1 2 3

12 【 , 】

14 () 1

1. 가 : 1 50%, 1
2. 1% : + 1%

5

15 【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_____

- 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9조)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제2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 제3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제4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제5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 제6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별표2) _____

(2) “ 1 () ”

(별표3) _____

(3) “ 1 () ”

1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2

- 7 【 () 】
- 8 【 】
- 9 【 】

3

- 10 【 () 】
- 11 【 】
- 12 【 】
- 13 【 , 】
- 14 【 】

4

- 15 【 】
- 16 【 】

5

- 17 【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

10 【 】

이 특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일요일』 및 『사고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휴일로 합니다.

11 【 】

10 ()

“ ”
가 가 (“
”) (1 “
”)
1. (2) (1
)
가 :
2. (“ ”) 가 6
:

12 【 】

11 () 1
가

’) 2 ’ 27 (

가

11 1 2
180 180

3

() 가
2 ()

11 () 2
가

가

5 2
가

가
가

5 가 가
가 6 가

1. 6

2. 1 가
가
5 7
가
70% .

13 【 ,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14 【 】

4

15 【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_____

급 여 명	지 급 사유	지 급 액												
휴일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11조 제1호)	피보험자가 특약 의 보험기간 중 휴일(휴 일의 정의)에 한 휴일에 재해 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특약보험가입 금액의 전액												
휴일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11조 제2호)	피보험자가 특약 의 보험기간 중 휴일(휴 일의 정의)에 한 휴일에 재해 로 인하여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기준:특약보험 가입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장해 등급</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2급</td> <td>70%</td> </tr> <tr> <td>3급</td> <td>50%</td> </tr> <tr> <td>4급</td> <td>30%</td> </tr> <tr> <td>5급</td> <td>15%</td> </tr> <tr> <td>6급</td> <td>10%</td> </tr> </tbody> </table>	장해 등급	지급액	2급	70%	3급	50%	4급	30%	5급	15%	6급	10%
장해 등급	지급액													
2급	70%													
3급	50%													
4급	30%													
5급	15%													
6급	10%													

(별표2) _____

(2) “ 1 () ”

(별표3) _____

(3) “ 1 () ”

1

1 []
2 []
3 []
4 []
5 []
6 []

2

()
7 []
8 []
9 []

3

()
10 []
11 []
12 []
13 []
14 []
15 []

5

16 []
17 []

6

18 []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

10 【 】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별표2(질병 및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이라 함)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 】

가
4
(
가
)
) (“ ”
) (“ ”
) .

12 【 】

11 ()
1 120
.
1 가
4 2 1
1

180

11 ()
가

1

11 ()
) (“ ” 3()가

1) 가 11 (가
가

13 【 가 】

가

1. 가 가
,

2. 가 가
,

3. 가

1 가

1. 1 1

2. 1 2

3. 1 3

14 【 ,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15 【 】

4

16 【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입원급여금(약관 제11조)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지 급 액	10,000원

(별표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 - B99
2. 신생물	C00 - D48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D50 - D89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 - E90
5. 신경계의 질환	G00 - G99
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 - H59
7.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H60 - H95
8. 순환기계의 질환	I 00 - I 99
9. 호흡기계의 질환	J00 - J 99
10. 소화기계의 질환	K00 - K93
11.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00 - L99
12.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 - M99
13.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N00 - N99
14. 임신, 출산 및 산욕	O00 - O99
15.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 - P96
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 - R99
17.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 - T98
18.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V01 - Y98
·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 호에 규정한 전염병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 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애(심신상실,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별표3) _____

(2) “ 1 () ”

(별표4) _____

(2) “ ”